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4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31.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80호)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4. 8. 상정·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정표근)

### 가. 제안이유

○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성북구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sup>1)</sup> 규정에 따라 구의회 추천 인원 1명과 성북구 옴부즈만

<sup>1)</sup> 제3조(옴부즈만의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2명을 성북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동의대상 : 인원 3명

| 연번 | 성명  | 출생년도<br>(나이)        | 신청자격     | 주요이력                                         | 비고        |
|----|-----|---------------------|----------|----------------------------------------------|-----------|
| 1  | 장광순 | 55. ** **<br>(만67세) | 5급이상 공무원 | - 前) 도봉구 구민감사관<br>- 前) 강북구 행정사무관             | 구의회<br>추천 |
| 2  | 이용재 | 53. ** **<br>(만69세) | 철도기술사    | - 現) (주) 제온기술<br>- 前) 서울시 지방시설주사(토목)         |           |
| 3  | 이강봉 | 59. ** **<br>(만63세) | 5급이상 공무원 | - 現) 한국역량평가개발원 전문위원<br>- 前)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부이사관 |           |

※ 선정방법 : 2022. 3. 21.(월)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면접심사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는 3명으로 그 중 1명은 성북구의회로부터 추천 받았고 2명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 하였으며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기술사,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으로 제출된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범위 내에서 선정된 것으로 문제가 없음.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3명 중 1명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제출된 읍부즈만 동의안은 2021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명의 신규 읍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공립 안암 어린이집 신축]

# 심사보고서

2022년 4월 20(수)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31.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81호)
- 나. 회부일자 : 2022. 4. 1.
-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4. 8. 상정·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재현)

####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sup>2)</sup>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sup>3)</sup>에 의거하여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내용

-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여 영유아 공공보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성북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국공립 안암어린이집)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함.

2)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별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안암 어린이집은 1988년 준공 후 34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안전한 보육환경 확보를 위해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안암 어린이집과 바로 경계에 접한 범바위어린이공원 토지 일부를 신축부지 확보하여 재원 영유아의 환경변화를 최소화하였음.
- 2015년 대비 2020년 기준 출생아 수 42%, 합계출산율 47% 감소<sup>4)</sup>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보다는 노후화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하여 공간 재배치를 통한 보육공간 확보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4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31.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82호)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4. 11. 상정·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가.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수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해당 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 삭제 (안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삭제)

4)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5년~2020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치법규(안)이 수정되어 자치법규안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하는 사항으로
- 기존 표준 조례안에서 제시되었던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조항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 신청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면서 기준요건 또한 골목상권의 특성을 담지 못하여 지정을 어렵게 했던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민생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